

법을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말자 (1)



글 / 전 해 성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1. 전력기술 관리법의 벌칙규정 (1)
 - 2. 전기공사업법의 벌칙규정 (2)
 - 3. 전기사업법의 벌칙규정 (3)
- III. 결 론

I. 서 론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평상시에는 법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다가 법에 위반되어 사건화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을 찾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입게 된다.

건강에 있어서도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이듯 법에 있어서도 금지규정을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보다 유익한 만큼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력기술인 여러분들은 전체 법률내용을 모두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규정은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력기술인과 직접관련이 있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전력기술관리법의 벌칙규정

가. 법 제28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발주한 자
- (2)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4)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감리를 업으로 한 자
- (5)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법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통상산업부장관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3. 설계 또는 감리업무수행중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 4.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6.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6) 법 제24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나. 법 제29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 (1) 법 제10조에서는 “설계사는 전력시설물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감리원은 설계도서·관련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한 자

※ 시행규칙 제14조(표준설계도서등) ①

- 법 제11조 제1항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 1. 건축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반

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소속 전력기술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써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일반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 시행령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1급설계사와 2급설계사로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2급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4) 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등) ①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및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7.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등록을 한 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업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③ 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 (5) 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 (6)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법 제30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자

※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설계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3.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5.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②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감리원은 감리원의 등록을 한 자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을 제외한다.

③ 전력기술인은 5년마다, 감리원은 3년마다 교육훈련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범위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종류와 등급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그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자·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17조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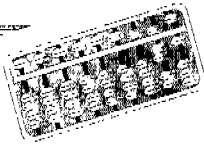
※ 시행규칙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이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

정을 위반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다음호에는 전기공사업법의 별칙규정이 소개됩니다.

1936년 9월10일생	
1962.	단국대 정외과 3년 수료
1984.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 수료
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국가정책과정) 수료
77. 6~86. 1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법제관(5급) · 입법조사관(4급)
86. 1~88. 8	국회 사무처 의사국 경위과장
88. 8~93. 3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 입법심의관(3급)
93. 3~95. 3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입법심의관(2급)
95. 3~97. 12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입법심의관 · 전문위원(2급)
현 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사
수상경력	근정포장 · 홍조근정훈장 수상



IMF 시대 알뜰 재테크 10계명



- ♡ 보험은 보장성보험을 택하라
: 같은 예탁일엔 만기시 되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이 납입료가 싸다.
- ♡ 아파트 청약통장은 예약하지 말라
: 분양기가 자율화되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 아파트는 여전히 청약통장이 유효하다.
- ♡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 연봉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우대신탁부터 들라.

- ♡ 비과세 가계저축보다 비과세가계신탁을 선택하라
: 확정금리인 비과세가계저축은 신탁상품보다 불리하므로 월1만원 플로 불입금액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비과세가계신탁에 다 불입하라.
- ♡ IMF이전에 가입한 적금류는 부은 기간이 3분의 1이하면 해지하라
: 예약후 돌려받은 돈은 고금리상품에 들라.
- ♡ 장기여유자금은 채권투자하라

- : 공공채나 금융채가 안전.
- ♡ 투자용 부동산은 빨리 처분하라
: 부동산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상가·오피스텔 투자는 절대 피하라.
- ♡ 부동산을 매입할 땐 경매를 적극 이용하라.
- ♡ 자동차·옷 등에 신용카드나 할부사 용을 억제하라.
- ♡ 목돈 운용은 장단기로 나눠서 투자하라.